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652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5. 8. 21.
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(행정안전부 예규 제300호 2024. 10. 4.개정)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이 참여하여 지역사회의 의사를 반영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“기금”용어 정의의 근거 규정 정비(안 제2조제4호)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→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

나.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 지방의회 의원 참여 규정 신설(안 제7조제3항제3호)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사항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 참조

- (2) 입법예고(2025. 2. 21. ~ 3. 13.)결과 : 의견없음
- 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(4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5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- (6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- (7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”로 한다.

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

제8조제2항 중 “열람하게 할 수 있다”를 “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4.“기금”이란 군의 특정한 행정목적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·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(개정 2014.7.10)</p> <p>제7조(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,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. 단 민간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되,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<신 설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- ----- 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----- -----제 159조----- -----.</p> <p>제7조(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<u>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</u></p>

<p>④ ~ ⑦(생략)</p> <p>제8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 평가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<u>열람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군의회 의원</u></p> <p>④ ~ ⑦(현행과 같음)</p> <p>제8조(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 ----- -----<u>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</u></p>
--	--

관 계 법 령

□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(행정안전부예규 제300호, 2024. 10. 4. 개정)

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

1. 총 칙

① 목 적

-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(이하 “자치단체” 라 한다.)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자 함

② 용어의 정의

① 금고(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제1항)

- 지방자치단체의 장(이하 “자치단체의 장” 이라 한다.)이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, 각종 세입금의 수납,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「은행법」에 의한 금융기관과 「지방회계법」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함

② 일반회계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)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를 말함

③ 특별회계(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)

-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 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計理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함

④ 기금(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2조)

-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·운영하는 자금을 말함

이하 생략

4. 금고의 지정절차

①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을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 라고 함)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함
 - ※ 자치단체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와 자치단체를 통합함에 따라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
-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·평가함
 - 가.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
 - 수의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 지정 방법을 심의함
 - 나.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·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 -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음
 - 다.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
 - 라.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-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
- 위원은 대학교수,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지방의원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(과반수이상)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, 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함
- 위원장 및 위원 선정, 위촉 기간, 위원 수,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등 기타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함

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

- 자치단체의 장은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등에 공고 및 통지하여야 함
-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